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73
------------	-------

발의연월일 : 2019. 6. 20.

발 의 자 : 백승주 · 박덕흠 · 최교일

이은재 · 김종석 · 주광덕

이현승 · 이채익 · 윤영석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 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u><신 설></u>	<u>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